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공사 착공부터 완료 시 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실제 처리비는 물론 도내 타 시군에 비하여 현격히 낮아 이를 인상하여 형평성을 도모.
- 나. 종량제 봉투 가격이 2000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현재 도내 시 평균의 86% 수준, 물가 상승률, 청소예산 자립도(21.8%), 주민부담률 등을 감안 2014년 까지 종량제 봉투 가격 15.4% 인상하여 생활쓰레기의 「배출자 부담원칙」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청소예산 자립도 제고 및 생활쓰레기 감량 유도

2. 주요내용

- 가.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 및 반입확인서 서식 개선
(안 별표 1 및 별지 제4호서식)
- 나. 종량제봉투 가격을 2013년 9월 1일부터 7.2% 인상 후, 2014년 9월 1일부터 7.5% 인상하여 총 15.4% 인상(안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2013. 3. 14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침.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전단 중 “별표 8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로 한다.

별표 1 중 일시적 다량폐기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별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100kg 이하	4,000원	
		100kg 초과	4,000원	
		100kg 마다	추가	
		5톤 미만	200,000원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기간별 판매가격에 따라 적용한다.

종량제봉투 가격표(제10조제2항 관련)

종류	업소이윤 (원)	기간별 판매가격(원)		
		2013.8.31까지	2013.9.1부터	2014.9.1부터
봉투 3ℓ	3	40	50	60
봉투 5ℓ	7	80	100	120
봉투 10ℓ	14	160	170	200
봉투 20ℓ	28	310	330	410
봉투 30ℓ	41	460	490	500
봉투 50ℓ	72	800	860	900
봉투 100ℓ	145	1,610	1,710	1,800
마대 20ℓ	90	1,000		
마대 30ℓ	120	1,500		

비고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방법

$$\begin{aligned} \text{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ell\text{당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봉투수수료자립도(목표치)} \\ &\quad +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이익} \end{aligned}$$

비고 2. 마대 판매가격 산정방법

$$\text{마대 판매가격} = \ell\text{당처리비용}(50\text{원}/\ell) \times \text{마대용량}(\ell)$$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일련번호	
(읍면동 보관용)						
배 출 자 (건 물 주)		주민번호	-			
		연 락 처				
배출장소 (주 소)						
공사업체명		공사내용				
공사업체 대 표 자		연 락 처				
공사업체 주 소						
폐 기 물 류		공사기간 중 총 배출예상량	톤	배출량	톤	
운 반 자		주민번호	-			
차량번호		연 락 처				
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1.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자원화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제7호, 제6조제6항) 2. 배출장소가 해당 읍면동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계 장	읍면동장	결 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일련번호	
(환경자원화시설 제출용)						
배 출 자 (건 물 주)		주민번호	-			
		연 락 처				
배출장소 (주 소)						
공사업체명		공사내용				
공사업체 대 표 자		연 락 처				
공사업체 주 소						
폐 기 물 류		공사기간 중 총 배출예상량	톤	배출량	톤	
운 반 자		주민번호	-			
차량번호		연 락 처				
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자원화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제7호, 제6조제6항)						

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 ○ 읍.면.동 장 (직인)

구미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거나, 배출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u>별표 8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u> 를 발급 받은 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에 기준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 ----- ----- ----- ----- ----- <u>별지 제4호서</u> <u>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u> ----- ----- -----, ----- ----- ----- -----.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별표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일시적 다량폐기물	1톤 미만	15,000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100kg 이하	4,000원					
	1톤 초과 100kg마다	1,500원 추가				100kg 초과 100kg 마다	4,000원 추가					
	5톤 미만	75,000원				5톤 미만	200,000원					
[별표 5]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5]								
종량제봉투 가격표				종량제봉투 가격표(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종류	봉투가격(원)		비고	종류	업소 이윤 (원)	기간별 판매가격(원)						
	업소이윤	판매가격				2013. 8.31까지	2013. 9.1부터	2014. 9.1부터				
3ℓ	3	40	종량제봉투가격 산정방법 = ℓ 당처리비용×봉투용량 ℓ× 봉투수수료자립도(목표치)+ 봉투제작비+판매이익	봉투 3ℓ	3	40	50	60				
5ℓ	7	80		봉투 5ℓ	7	80	100	120				
10ℓ	14	160		봉투 10ℓ	14	160	170	200				
20ℓ	28	310		봉투 20ℓ	28	310	330	410				
30ℓ	41	460		봉투 30ℓ	41	460	490	500				
50ℓ	72	800		봉투 50ℓ	72	800	860	900				
100ℓ	145	1,610		봉투 100ℓ	145	1,610	1,710	1,800				
마대 20ℓ	90	1,000	20ℓ(kg)⇒20ℓ(kg)×50원= 1,000원 30ℓ(kg)⇒50ℓ(kg)×50원= 1,500원	마대 20ℓ	90	1,000						
마대 30ℓ	120	1,500		마대 30ℓ	120	1,500						
				비고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방법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ℓ 당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봉투수수료자립도 목표치 + 봉투제작비 + 판매이익								
				비고 2. 마대 판매가격 산정방법 마대 판매가격 = ℓ 당처리비용(50원 ℓ) × 마대용량(ℓ)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17, 2009.6.9, 2010.1.13, 2010.7.23>

1. 생략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 9. 생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③ 생략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⑤ ~ ⑧ 생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1. ~ 8. 생략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